

가정법률상담

통권504호

2025

08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소 교육부는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2박 3일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를 진행하였다.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캠프는 올해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비혼모와 자녀 백여 명이 참석하여 가족법 교육과 상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 교육 등을 받고 다양한 가족소통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추억을 만들었으며, 다른 비혼모 가족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연대감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관련 내용 18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부 : 부귀영화도
패 : 패가망신도
방 : 방심하면 한 순간
지 : 지금부터 청렴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집 ❶ | 양육비 선지급제도 해설
- 12 • 특집 ❷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년도 상담통계 - 화상상담
- 18 • 특집 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 25 • 가정폭력상담실
- 27 • 어떻게 할까요
- 30 • 결혼과 인생(245) 영화 이야기
신성한 나무의 씨앗 _ 김용언
- 32 • 좋은 책
혼자라는 가족
- 33 • 실무수습 소감문
- 34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7 • 소송구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상담소의 가족법 개정운동이 맺은 또 하나의 결실

지난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첫날 담당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약 500건의 신청이 몰리면서 상담을 위한 전화 연결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움과 함께 이제 시작이라는 안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 우리 사회에서 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상담소의 그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지난 2001년 새해 1월부터 양육비 관련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상담소는 조사 연구와 논의를 거쳐 그해 5월에 “이혼가정과 자녀양육 : 양육비 제대로 받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열어 이에 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문제가 가정과 사회 전반의 심각한 과제로 고착되고 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 사회와 가정의 커다란 과제는 높아지는 이혼율이었습니다. 이혼 자체야 사적영역으로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자녀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개입이 불가피합니다. 가정의 가장 깊숙한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는 상담소에서 우리 사회의 이혼율 급증과 자녀 양육의 문제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법 공부를 하는 학생들조차 상담소에 와서 ‘호주제’ ‘호주제 폐지’를 묻고 신기하게도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 양육에 관해 부모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 것은 1991년, 20세기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 역시 상담소 창설과 함께 본격화된 가족법 개정운동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의 한 결과였습니다.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 호주제의 완전한 폐지는 여전한 과제로 남았으나 - 호주제의 대폭 수정이 이루어졌고 친족범위가 조정되어 부부 차별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이혼하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던 것 그리고 양육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가 책임지도록 하던 것을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나마 남녀평등, 부부평등을 모습을 갖추는 것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가능했고 그나마 호주제 폐지는 그 다음 세기에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남편, 아버지의 의사가 우선되던 것에서 협의가 먼저 그리고 이어 가정법원의 개입이 가능해졌지만 결혼하면서 경력단절이 되거나 같은 직종에 있어도 임금을 비롯해 모든 여건이 남성보다 불리했던 여성이 이혼하면서 양육비 없이 자녀와 살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부부갈등, 이혼, 양육과 친권에 대한 상담을 거듭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이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당시 사회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양육비 선급제를 대안으로 제기했습니다. 2001년 상담소의 심층 조사 연구 결과는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3배 이상 많았고 실제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모두 친권자가 어머니로 지정된 경우가 2배 이상 많았으나 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61.3%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고 별거의 경우 83.3%가 이에 해당하였습니다.

심층면접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드러낸 이들은 양육비 지급의 시급함을 지적하며 이혼가정의 복리를 총괄하며 특히 양육비 집행을 도와주는 행정기관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절박하고 현실적인 요구였습니다. 상담소는 조사와 연구를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 심포지엄을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에 대해 독일 등 외국의 양육비 선급제도와 이혼가정의 자녀 보호 제도 등을 짚어보았으며 지속적으로 공청회, 법

안 발의,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간담회, 연구 보고서 발간 등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2015년 3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범을 볼 수 있었으며 마침내 올해 7월에 이르러 양육비 선지급제의 시행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법과 제도의 시행은 앞으로도 더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상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는 가정과 가족구성원 모두의 복리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해 사회 전체가 관심을 두어야 하고 정책과 제도에 있어 취약계층을 최우선에 놓는 복지 사회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단적으로 양육비 선급제도만 놓고 보더라도 상담소는 우리 사회의 가정, 가족문제에 있어 최전선에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법과 제도, 정책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 검토하면서 아울러 사회 구성원의 의식개혁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상담소의 역사가 7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기 시작한 것도 40여 년이 되어 갑니다. 고마운 일이고 소중한 예산이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도 예산 관련 부처의 상담소가 상담이나(?) 하면 될 일이지 조사, 연구나 교육 같은 사업은 하지 말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해마다 더 강하게 받는 현실은 개탄스럽기조차 합니다. 가정과 가족에 관해 우리 사회의 어디, 누구보다 혜안을 가지고 가정 내 부부평등 남녀평등을 위해 선구적 사업을 창의적으로 헌신하며 펼쳐온 유서 깊은 상담소를 단지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조금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함부로 대하는 정부 부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한사람입니다. 상담소는 이 점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70년 동안 한순간도 쉬운 길이 없었던 상담소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 모든 가족구성원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해당 부처나 정부당국의 상담소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켜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특집 ①

양육비 선지급제도 해설

한부모가족 등 양육비 채권자에게 반가운 제도로 7월 1일부터 시행 중 도입 반가우나 제도 이용을 위한 문턱 낮추어야

1. 양육비 선지급제도 주요내용

2025년 7월 1일부터 당장 양육비를 필요로 하는 한부모 가족 등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부양의무자(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양육비이행법)¹⁾ 제21조의6 내지 제21조의14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녀 나이 만 18세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할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항, 제2항). 다만,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매월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²⁾

양육비 선지급의 지원대상 및 요건은 만 18세 이하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서,

- 1)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주: 한부모와 미성년자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589만 원 이하인 경우)

- 3)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5).

선지급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할 수 있으며 필수서류로는,

- 1) 신청서 및 동의서(개인정보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행정정보공동이용) 1부.
- 2) 양육비 이행금액 등이 확정된 양육비 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서류 등 집행권원 일체.
- 3)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4)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내용 등 양육비 이행확보서류.

1)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5. 7. 1.] [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일부개정]/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79호, 2025. 6. 2. 일부개정)

2)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5. 7. 1.]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28호, 2025. 6. 16., 제정]

- 5)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 사본.
 - 6) 신청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등이다.

지원절차는 상담을 통해 신청서가 접수되면³⁾ 서류 검토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거쳐 자격 판정이 되면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지급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이행 및 자격 변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 부정수급 시에는 반환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제 강제징수 예에 따라 선지급금 회수를 하게 된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10).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1) 선지급은 현재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것이므로 과거에 받지 못한 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없다.
- 2)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경우 성년의제가 되어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 3) 현재 양육비 선지급 금액이 월 20만 원이므로, 이혼 당시 양육비를 월 15만 원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선지급 금액은 20만 원이 아닌 15만 원이 된다.
- 4)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지급을 받던 중이더라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지급한 경우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 5) 비혼모의 경우 자녀의 인지 이후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인지 청구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자녀의 부의 신상을 특정하지 못해 인지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 6) 양육비 채권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수급비 지원 금액의 감액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꼭 문의해 보고 신청하여야 한다.

2. 양육비 선지급제도⁴⁾ 도입 경과

1) 개요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01년 5월에 주최한 ‘이혼가정과 자녀양육 - 양육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심포지엄에서 김상용 교수⁵⁾에 의해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소개되었다. 김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재판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의 생계가 곤란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국가에서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급히 양육비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부양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제하고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양육비 선급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을 소개하면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공적 책임의 일환으로 양육비 선급 제도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였다. 양육비 선급 제도 도입 논의는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던 한부모들은 양육비 선급 제도 도입에 대해 큰 기대를 가졌다. 이에 상담소에서는 양육비 선급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언론과 국회, 여성부(여성가족부),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 등에 도입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활동과 더불어 상담소 내·외부 주최 강의와 교육,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간담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양육비 선급제도의 도입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들을 비롯한 각 당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양육비 선급제도를 법제화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입을 통한 효과적인 양육비 이행확보제도 확

3)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4)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도입논의 초기에는 ‘양육비 선급’으로 하였으나 국회에서 법안의 조율 과정에서 ‘양육비 대지급’란 단어로 바뀌었다. 이후 19대 국회 이후 제출된 관련법안들에서는 ‘양육비 선지급’과 대지급이 혼용되었다.

5) 전 부산대 법과대학 교수, 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사 및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

립을 위해 2005년에는 ‘양육비채권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안’과 ‘양육비 선급법안’을 마련하였고,⁶⁾ 두 법안은 병합되어 2005년 김재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제17대 국회에 제출되었다. 상담소의 법률안에서는 양육비 선급의 신청요건으로 부양의무자가 양육비채무를 1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선급 기간은 최장 6개월(6월의 한도에서 연장 가능)로 하였고, 선급되는 양육비는 자녀 1인당 40만 원을 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양육비 선급의 중지과 선급된 양육비의 반환의무,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권 등을 규정하였다. 동 법안을 기초로 한 김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 중 양육비 선급 부분은 ‘양육비 선급’을 국가가 대신 지급한다는 의미로 ‘양육비 대지급’으로 바꾸고 양육비 채무를 2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미성년자녀가 15세 미만일 것 그리고 대지급 기간은 12월로 일부 수정하여 제출되었다. 이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지급까지 국가가 책임질 경우 이혼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고, 재정적인 이유로 순차적으로 대지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국가가 대지급을 해 줄 경우 한부모 가정은 직접 양육비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두 국가에게 청구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의 남발로 국가의 재정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법사위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상담소에서는 1970년대 후반에 이미 양육비 선급 제도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 우리보다 월등하지 않았고, 선급된 양육비의 회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 양육비 문제를 사회적 지원체계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도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를 더 이상 개인적 차원에 머물게 하지 말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17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양육비 선급을 포함한 양육비 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제18대 국회에서도 강명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 법안’을 비롯한 양육비 선급 법

안들이 4건 제출되었으나 재정문제를 핑계로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았다. 상담소에서는 양육비 선급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우선 경제적,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비혼가정에 대해 양육비 및 부양료 대지급 실시를 목적으로 한 ‘비혼가정의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⁷⁾ 이 법안은 우윤근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제18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우윤근 의원안과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선지급법안’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위 법안들 모두 2005년에 상담소가 제출한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어 유사한 체계와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선급법안은 2014. 2. 27.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안한 원안이 가결됨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신설하는 것에 그쳤다.

이후 제20대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선지급 관련법안이 2건 제출되었으나 2018. 2. 28.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제안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원안 가결되어 긴급지원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는 정도의 개정만 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9건의 선지급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어 제22대 국회에 들어와 10여 건의 선지급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고, 2024. 9. 25.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제출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드디어 양육비 선급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3.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의의와 과제

그동안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부분은 민법과 가사소송법 그리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과 신설 등을 통해 많이 개선되고 체계화되었으나 양육비

6) 김상용 교수 작성.

7) 김상용 교수 작성.

선급제도 도입은 한부모들의 열망과 여론의 상당한 반향 그리고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 등의 이유로 계속 진행되지 못하였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한부모들이 양육비 청구를 하여 현실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받기 까지에는 많은 절차와 노력 그리고 시간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상담창구에서는 “왜 양육비를 받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냐” 라든가 ‘직접 싸우기도 버거우니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주고 상대방에게 국가에서 징수해달라’ 혹은 ‘대신 받아서 자동으로 입금되도록 해달라’ 등의 요청들이 적지 않았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미성년 자녀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므로 당장의 양육비가 없어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선급은 꼭 필요한 제도였고 그것이 상담소가 2001년부터 양육비 선급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다. 양육비 선급에 관한 법률안이 2005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 만에 시행됨으로써, 당장 양육비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소액이나마 일정하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양의무를 스스로 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나서서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듯이 집행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기대할 수도 있게 되었다.

한편,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도입을 반기면서도 제도 이용을 위한 문턱이 높다는 불만들도 벌써부터 표출되고 있다. 본 상담소에는 양육비 선급을 신청하고 싶으나 다음과 같은 장애로 못하고 있다는 호소들이 있었다.

1) 양육비를 일시금 지급으로 약정한 경우

5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1세 된 자녀의 양육비로 일시금 3억 원을 전남편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받은 것은 전남편의 은행예금을 압류하여 받은 19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번에 양육비 선급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정기급으로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서 양육비 선급신청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2)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경우

전남편이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10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자녀를 만나러 온 적도 없습니다. 저 또한 생활이 너무 바빠서 양육비채권이 있어도 강제집행을 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육비 선급제도가 생겼다고 하여 희망을 가졌으나 양육비 이행강제를 위한 절차를 밟았던 적이 없어 신청을 못한다고 합니다.

3) 양육비를 지급 받지 않기로 협의하였거나, 양육자 부담으로 협의한 경우

협의이혼 당시 전남편이 제계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포기해야만 이혼을 하겠다고 강요하여 양육권과 친권만 제가 갖기로 하고 이혼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자인 저의 부담으로 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양육비 채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양육비 선급제 신청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들 중 지금이라도 강제이행절차를 밟아 선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양육비변경청구부터 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급 신청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일시금으로 협의한 경우에는 아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있다.

한편 양육비 선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야 하는데 당장의 양육비가 없어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집행권원을 비롯한 각종 자료의 제출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사 및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양육비가 시급히 필요한 가정에 국가가 대신해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양육비 선급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공백없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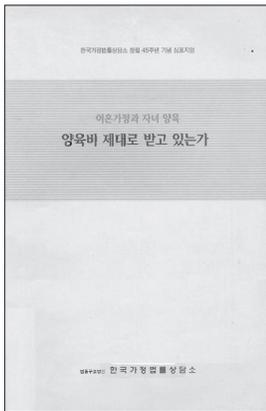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01.1. 양육비이행확보 입법방향회의
- 김상용교수(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및 상담소 임직원 참석

2001.3-4. 이혼가정의 양육실태 및 의식조사

2001.5.31. 이혼가정과 자녀양육 :
“양육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심포지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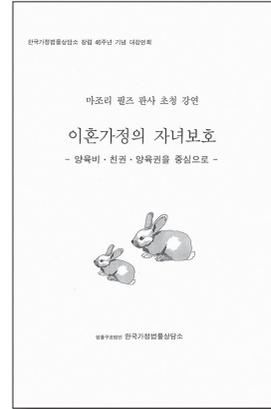


2001.9. / 2001.11. / 2002.1.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에 정책제안 의견서 ‘현대한국가정의 제문제 진단과 예방 및 대안’에서 양육비선급제도 도입 건의 및 제출 / 광배희 소장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2001.10. / 2001.12. / 2002.5.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제안 의견서 ‘이혼가정의 양육비확보를 위한 정책제안’에서 양육비선급제도 도입 건의 / 광배희 소장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 각국의 양육비이행확보제도와 양육비선급제도 소개 및 도입필요성 주장 (김상용 교수)
- 미국의 연방정부의 양육비 징수에 관한 주요 입법 내용 소개 (정미화 변호사, 법무법인 남산)

2002.5. 한국가족학회 ‘결혼·이혼 및 재혼관련 정책’ 학술대회에서 양육비이행확보 및 양육비선급제도 등 발표(조경애 상담위원)

2002.11. 양육비확보 입법안 마련 위한 내부 검토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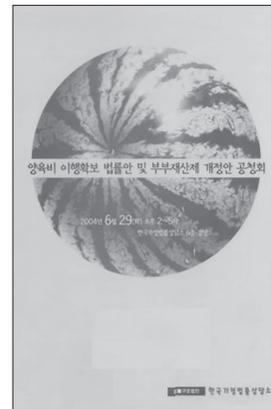
2002. / 2003. 한나라당, 민주당에 양육비선급제도 도입 포함 양육비 입법 정책 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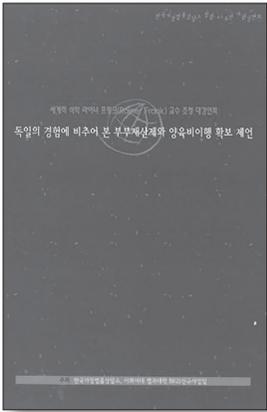
2003.2.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가족정책제안서’에서 양육비선급제도 도입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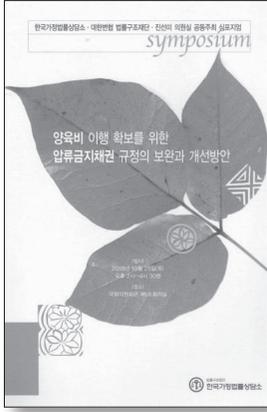
2003.11. 청와대에 제출한 정책개진보고서 ‘새로운 시대, 열린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에서 양육비선급제도 도입 건의

2004.5. 청와대 빈곤대책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개진보고서 ‘이혼가정의 양육비 확보 입법안’에서 양육비선급제도 도입 건의

2004.6.29.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안 및 부부재산제 개정안 공청회 주최
- ‘부부재산제 및 양육비이행확보 대안에 대한 토론문’에서 양육비선급제도 도입 필요성 주장 (이화숙 교수)



- 2004.9. 가정상담 2004년 9월호
- 특별기획1: 양육비선급에 관한 주요한 제안- 양육비 선급법(사안)에서 법률안 제안의 이유 및 내용 소개(김상용 교수)
- 2005.9.1. 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 제출
- 상담소의 '양육비채권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안' 과 '양육비선급법안'을 통합하여 발의, 제출됨
- 2005.10.28. '세계적 석학 라이너 프랑크 교수 초청 대강연회-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본 부부재산제와 양육비 이행 확보 제언' 주최
- 
- '한부모가족의 부양료 확보' - 독일 양육비선급법 도입 소개(김상용 교수 번역)
- 2005.12. 국회 법사위에 양육비선급법안 의견서 제출
- 2005.12.5./12.16. 법무부 법무실 주관 가족법개정위원회에서 상담소의 '양육비채권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안'(양육비 선급법 등) 추진 논의 / 광배희 소장이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 2008.9. 여성부 주최 '양육비확보방안과 산정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이행확보 및 선급제도 도입을 주장(조경애 상담위원 토론 발표)
- 2009.3. 국회 강명순 의원 대표발의 '양육비대지급법안'에 대해 의원실과 보건복지가족부에 의견서 제출
- 2009.5.6. 국회 강명순 의원실 주최 '양육비대지급제정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행확보 및 선급제도관련 발표(조경애 상담위원)
- 2009.8.20. 상담소 가족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정 추진 중 혹은 개정 추진이 필요한 가족법 조항 검토'에서 양육비 선급 제도 관련법 논의

- 2009.10.20. 가족법개정운동60년사 - 상담소 양육비선급법안과 김재경 의원 발의안 소개
- 2012.3. 여성가족부 주최 '양육비이행확보방안 검토 방향 보고회'에서 양육비선급제도 도입과 수행기관 논의(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참석)
- 2012.9.3. 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주최 양육비이행확보 강화방안을 위한 세미나이행확보 및 양육비선급제도 도입 주장(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토론 발표)
- 2012.10.16. 여성가족부 주최 '양육비 이행지원 법률구조단 발족을 위한 사업수행기관 관계자 간담회'-양육비선급 이행강제기관 설립준비(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참석)
- 2013.5. 가정상담 2013년 5월호
- 기획: 양육비 선지급관련 법안 검토(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본소 '양육비선급법안' 이 2005년 '양육비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경과 소개, 19대 국회 양육비 선지급관련 법안 3개 검토(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 2018.10.25.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주최
- 
-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은영 변호사) : 외국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관한 입법례 중 영국, 독일의 선지급 제도 소개
- 2022.10. '자녀 양육비 법적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 발간(미간행, 신연희 성공회대 교수,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개선방안 중 하나로 양육비 대지급 제도 제시



특집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년도 상담통계 | 화상상담

사회적 변화에 따라 2022년 하반기에 시작한 화상상담 상담 방법의 하나로 안정적 자리매김

- 2024년 한 해 동안 870건 상담,
- 2022년 7월 처음 시작, 2023년 793건에서 증가

- 줌(Zoom) 플랫폼 사용 용이한 청장년층 이용 많고
- 이동에 제약 없어 어린 아이 키우는 주부 이용률 높아
- 대기없이 신청시간에만 접속하면 상담 가능해
회사원과 자영업자 이용률도 높아

- 이혼, 양육비, 친권/양육권, 유언/상속 순으로 상담 많아

본 상담소에서는 2022년 7월 15일부터 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화상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 사정으로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도 법적 상담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화상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대면 상담에 익숙해진 내담자들이 거리상, 시간상 편리성을 고려해 꾸준히 화상상담을 신청해 와 상담소에서는 활발하게 화상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소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개의 회선에서 30분 단위로 상담 예약을 받고 있다. 내담자들은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개인 휴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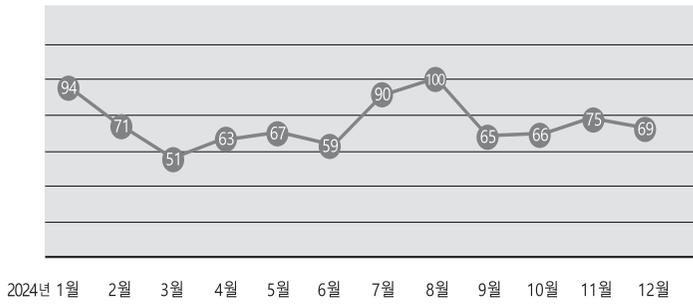
기를 통해 국내외 등 장소 제약 없이 자신이 신청한 시간에 접속하기만 하면 손쉽게 편리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1. 상담건수

2024년도 한 해 동안 본 상담소에서는 870건의 화상상담을 진행하였다. 시작 초기에는 월별로 상담건수의 등락 폭이 컸으나 2023년부터는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2024년에는 월 평균 73건 내외의 상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 월별 상담건수 분석표 〉

월	2024년
1	94
2	71
3	51
4	63
5	67
6	59
7	90
8	100
9	65
10	66
11	75
12	69
합계	870
월평균	73



내담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701명(80.6%), 남성이 169명(19.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1배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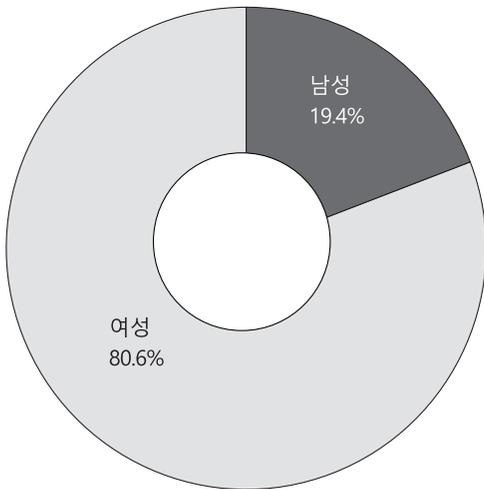
본 상담소에서 2024년도에 진행된 면접상담을 한 내담자의 성별은 여성 55.4%, 남성 44.6%로 나타났는데 화상상담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더욱 높았다.

2. 내담자 특성별

1) 남녀별

- 여성이 남성보다 4.1배 많아

성별	인원	비율
여성	701명	80.6%
남성	169명	19.4%
합계	870명	100.0%



2)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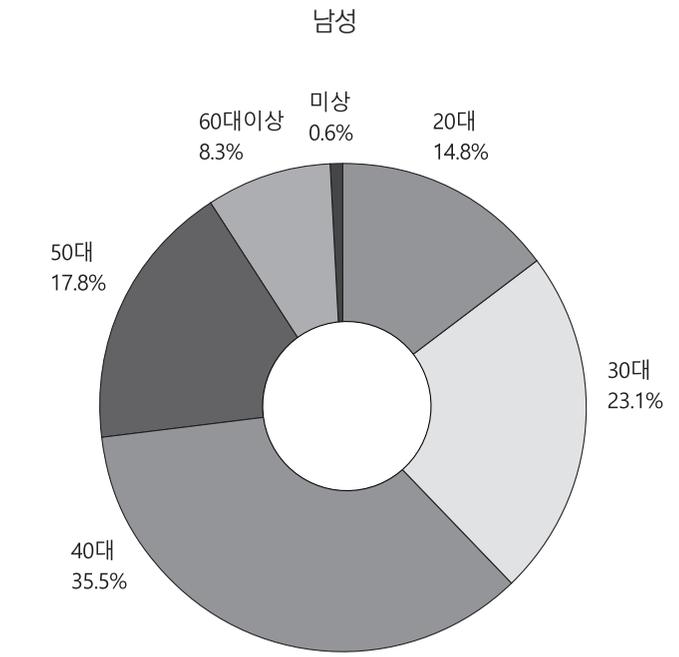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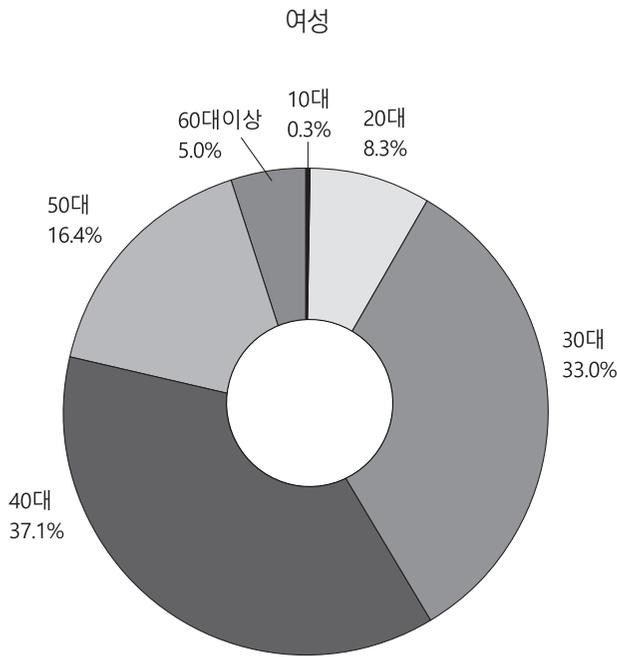
- 남녀 모두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나타나
- 일반 면접상담에 비해 줌 플랫폼 접근 용이한 청장년층 많아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36.8%(320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30대(31.0%, 270명), 50대(16.7%, 145명), 20대(9.5%, 83명), 60대 이상(5.6%, 49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40대가 37.1%(26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33.0%, 231명), 50대(16.4%, 115명), 20대(8.3%, 58명), 60대 이상(5.0%, 35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40대가 35.5%(6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23.1%, 39명), 50대(17.8%, 30명), 20대(14.8%, 25명), 60대 이상(8.3%, 14명) 순으로 나타나 여성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 연령별 분석표 〉

연령	성별	여성		남성		합계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대		2	0.3	-	-	2	0.2
20대		58	8.3	25	14.8	83	9.5
30대		231	33.0	39	23.1	270	31.0
40대		260	37.1	60	35.5	320	36.8
50대		115	16.4	30	17.8	145	16.7
60대 이상		35	5.0	14	8.3	49	5.6
미상		-	-	1	0.6	1	0.1
합계		701	100	169	100	870	100



한편 본 상담소에서 2024년도에 진행된 면접상담의 내담자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은 40대(27.9%), 60대 이상(22.4%), 50대(22.1%), 30대(19.9%), 20대(6.6%) 순으로, 남성은 60대 이상(30.3%), 40대(26.9%), 50대(25.8%), 30대(12.2%), 20대(4.2%) 순으로 나타나 화상상담과 차이를 보였다.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주부가 33.7%(23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회사원(19.5%, 137명), 기타(9.3%, 65명), 자영업·교육직(각 6.6%, 각 46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회사원이 36.7%(6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영업·무직(각 11.2%, 각 19명), 기타(8.9%, 15명), 교육직(4.7%, 8명) 순으로 나타나 여성과 차이를 보였다.

각 상담방법별로 내담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볼 때 화상상담은 일반 면접상담에 비해 30대의 비율이 높고 60대 이상의 비율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상상담 진행 시 기반이 되는 줌 플랫폼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고령층보다는 젊은층에서 더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본 상담소에서 2024년도에 진행된 면접상담의 내담자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은 주부가 2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회사원(7.0%), 기타(6.0%), 단순노무(5.6%), 무직(3.8%)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회사원이 2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영업(14.0%), 무직(11.3%), 단순노무(9.1%), 기타(4.3%)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3) 직업별

- 여성은 주부, 회사원, 기타, 자영업·교육직 순으로
- 남성은 회사원, 자영업·무직, 기타, 교육직 순으로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부가 27.2%(237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회사원(22.9%, 199명), 기타(9.2%, 80명), 자영업(7.5%, 65명), 교육직(6.2%, 54명) 순으로 나타났다.

화상상담과 면접상담을 비교해 볼 때 여성의 경우 주부가 가장 많았던 점은 동일하였으나 화상상담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았다(화상상담 주부 33.7%, 면접상담 주부 25.5%). 남성의 경우 회사원이 가장 많았던 점은 동일하였으나 화상상담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았다(화상상담 회사원 36.7%, 면접상담 회사원 21.3%).

〈 직업별 분석표 〉

연령	성별	여 성		남 성		합 계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주부		236	33.7	1	0.6	237	27.2
회사원		137	19.5	62	36.7	199	22.9
단순노무		17	2.4	6	3.6	23	2.6
자영업		46	6.6	19	11.2	65	7.5
공무원		20	2.9	3	1.8	23	2.6
군인		1	0.1	-	-	1	0.1
교육직		46	6.6	8	4.7	54	6.2
전문직		24	3.4	3	1.8	27	3.1
운전		3	0.4	3	1.8	6	0.7
세일즈		10	1.4	-	-	10	1.1
학생		9	1.3	5	3.0	14	1.6
간호사		7	1.0	-	-	7	0.8
의사		2	0.3	-	-	2	0.2
농수산임목		1	0.1	-	-	1	0.1
예술인		1	0.1	-	-	1	0.1
종교인		1	0.1	1	0.6	2	0.2
기술직		3	0.4	5	3.0	8	0.9
무직		17	2.4	19	11.2	36	4.1
기타		65	9.3	15	8.9	80	9.2
미상		55	7.8	19	11.2	74	8.5
합 계		701	100	169	100	87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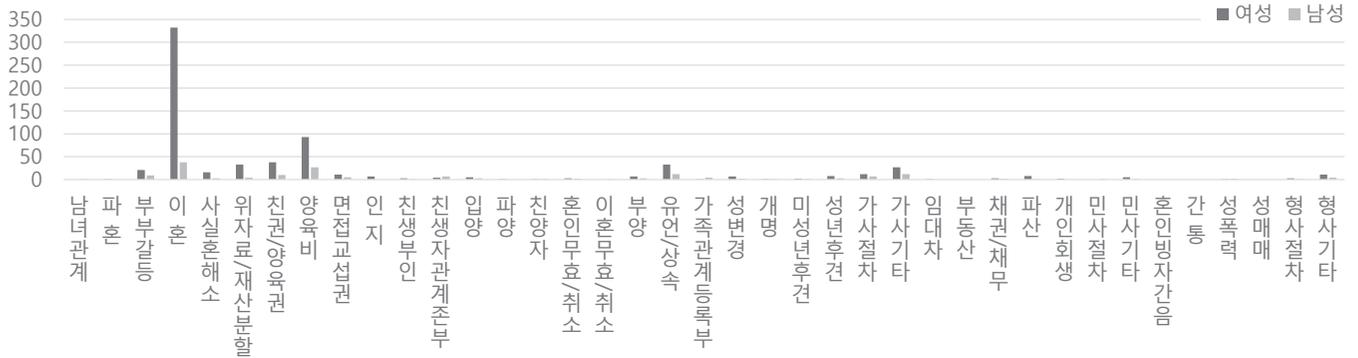
4) 월수입별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어린 자녀를 둔 주부나 회사원, 자영업자의 화상상담 이용률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이동에 제약이 없고, 대기 없이 신청한 시간에만 접속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화상상담의 용이성 때문으로 보인다.

- 여성은 무·미상, 201~300만원, 101~200만원, 301~500만원 순으로
- 남성은 무·미상, 301~500만원, 201~300만원, 101~200만원 순으로

〈 월수입별 분석표 〉

연령	성별	여 성		남 성		합 계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30만원 이하		19	2.7	-	-	19	2.2
31 ~ 100만원 이하		41	5.8	6	3.6	47	5.4
101 ~ 200만원 이하		101	14.4	22	13.0	123	14.1
201 ~ 300만원 이하		121	17.3	24	14.2	145	16.7
301 ~ 500만원 이하		78	11.1	45	26.6	123	14.1
501만원 이상		26	3.7	21	12.4	47	5.4
무·미상		315	44.9	51	30.2	366	42.1
합 계		701	100	169	100	870	100



〈 사건내용별 분석표 〉

사건 내용	성 별	여 성		남 성		합 계	
		사건수(명)	백분율(%)	사건수(명)	백분율(%)	사건수(명)	백분율(%)
가 사 824건 (94.7%)	남녀관계	-	-	1	0.6	1	0.1
	파 혼	1	0.1	-	-	1	0.1
	부부갈등	21	3.0	9	5.3	30	3.4
	이 혼	332	47.4	38	22.5	370	42.5
	사실혼해소	16	2.3	3	1.8	19	2.2
	위자료/재산분할	33	4.7	4	2.4	37	4.3
	친권/양육권	38	5.4	10	5.9	48	5.5
	양육비	93	13.3	27	16.0	120	13.8
	면접교섭권	11	1.6	5	3.0	16	1.8
	인 지	7	1.0	-	-	7	0.8
	친생부인	3	0.4	1	0.6	4	0.5
	친생자관계존부	4	0.6	7	4.1	11	1.3
	입양	5	0.7	3	1.8	8	0.9
	파양	1	0.1	-	-	1	0.1
	친양자	1	0.1	1	0.6	2	0.2
	혼인무효/취소	3	0.4	2	1.2	5	0.6
	이혼무효/취소	-	-	1	0.6	1	0.1
	부양	7	1.0	3	1.8	10	1.1
	유언/상속	33	4.7	12	7.1	45	5.2
	가족관계등록부	1	0.1	4	2.4	5	0.6
성변경	7	1.0	2	1.2	9	1.0	
개명	1	0.1	1	0.6	2	0.2	
미성년후견	2	0.3	1	0.6	3	0.3	
성년후견	8	1.1	3	1.8	11	1.3	
가사절차	12	1.7	7	4.1	19	2.2	
가사기타	27	3.9	12	7.1	39	4.5	
민 사 24건 (2.8%)	임대차	1	0.1	-	-	1	0.1
	부동산	-	-	-	-	-	-
	채권/채무	3	0.4	2	1.2	5	0.6
	파산	8	1.1	1	0.6	9	1.0
	개인회생	2	0.3	-	-	2	0.2
	민사절차	-	-	1	0.6	1	0.1
형 사 22건 (2.5%)	민사기타	5	0.7	1	0.6	6	0.7
	혼인빙자간음	-	-	-	-	-	-
	간 통	-	-	-	-	-	-
	성폭력	1	0.1	2	1.2	3	0.3
	성매매	-	-	-	-	-	-
	형사절차	3	0.4	1	0.6	4	0.5
형사기타	11	1.6	4	2.4	15	1.7	
합 계		701	100	169	100	870	100

월수입을 살펴보면 없거나 미상인 경우가 42.1%(366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01~300만원 이하(16.7%, 145명), 101~200만원 이하·301~500만원 이하(각 14.1%, 각 123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없거나 미상인 경우가 44.9%(31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1~300만원 이하(17.3%, 121명), 101~200만원 이하(14.4%, 101명), 301~500만원 이하(11.1%, 78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도 없거나 미상인 경우가 30.2%(51명)로 가장 많았는데 다음은 301~500만원 이하(26.6%, 45명), 201~300만원 이하(14.2%, 24명), 101~200만원 이하(13.0%, 22명) 순으로 나타나 여성과 차이를 보였다.

3. 사건내용별

- 이혼, 양육비, 친권/양육권, 유언/상속 순으로 상담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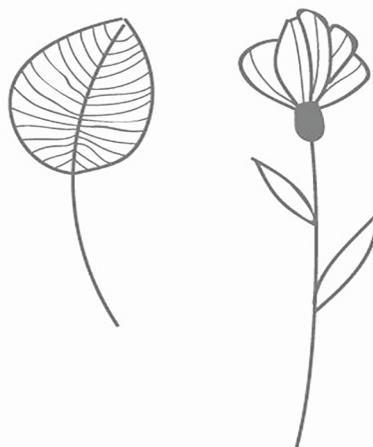
상담을 내용별로 구분해보면, 총 870건 중 가사사건이 824건으로 94.7%를 차지하였다. 민사사건은 24건(2.8%), 형사사건은 22건(2.5%)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항목은 이혼으로 총 870건 중 370건(42.5%)에 달했다. 다음은 양육비(120건, 13.8%), 친권/양육권(48건, 5.5%), 유언/상속(45건, 5.2%), 가사기타(39건, 4.5%), 위자료/재산분할(37건, 4.3%), 부부갈등(30건, 3.4%), 사실혼해소·가사절차(각 19건, 각 2.2%), 면접교섭권(16건, 1.8%), 형사기타(15건, 1.7%), 친생자관계존부·성년후견(각 11건, 각 1.3%), 부양(10건, 1.1%), 성변경(9건, 1.0%), 입양(8건, 0.9%), 인지(7건, 0.8%), 민사기타(6건, 0.7%), 혼인무효/취소·가족관계등록부·채권/채무(각 5건, 각 0.6%), 친생부인·형사절차(각 4건, 각 0.5%), 미성년후견·성폭력(각 3건, 각 0.3%), 친양자·개명·개인회생(각 2건, 각 0.2%), 남녀관계·파혼·파양·이혼무효/취소·임대차·민사절차(각 1건, 각 0.1%)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총 701건 중 이혼이 332건(4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양육비(93건, 13.3%), 친권/양육권(38건, 5.4%), 위자료/재산분할·유언/상속(각 33건, 각 4.7%), 가사기타(27건, 3.9%), 부부갈등(21건, 3.0%), 사실혼해소(16건, 2.3%), 가사절차(12건, 1.7%), 면접교섭권·형사기타(각 11건, 각 1.6%), 성년후견·파산(각 8건, 각 1.1%), 인지·부양·성변경(각 7건, 각 1.0%), 입양·민사기타(각 5건, 각 0.7%), 친생자관계존부(4건, 0.6%), 친생부인·혼인무효/취소·채권/채무·형사절차(각 3건, 각 0.4%), 미성년후견·개인회생(각 2건, 각 0.3%), 파혼·파양·친양자·가족관계등록부·개명·임대차·성폭력(각 1건, 각 0.1%)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총 169건 중 이혼이 38건(2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양육비(27건, 16.0%), 유언/상속·가사기타(각 12건, 각 7.1%), 친권/양육권(10건, 5.9%), 부부갈등(9건, 5.3%), 친생자관계존부·가사절차(각 7건, 각 4.1%), 면접교섭권(5건, 3.0%), 위자료/재산분할·가족관계등록부·형사기타(각 4건, 각 2.4%), 사실혼해소·입양·부양·성년후견(각 3건, 각 1.8%), 혼인무효/취소·성변경·채권/채무·성폭력(각 2건, 각 1.2%), 남녀관계·친생부인·친양자·이혼무효/취소·개명·미성년후견·파산·민사절차·민사기타·형사절차(각 1건, 각 0.6%) 순으로 나타났다.

김진영 상담위원





특집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앞으로 또 살아갈 힘을 얻어 가요.’

- 가족 사이에 애착과 친밀감 키우고 사회적 연대감 증진
- 소중한 추억과 더불어 의미 있는 배움의 시간이며, 양육비 및 주거 관련 지식 얻어 든든하다는 소감 많이 남겨

- 일 시 : 2025년 7월 17일(목) ~ 7월19일(토)
- 장 소 : 한국여성수련원(강원도 옥계)
- 참가자 : 비혼모 48명, 자녀 49명
조은경, 고현희 상담위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엄윤화 주임(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릉권
주거복지센터 강릉지사)
노재광 (AHA교육컨설팅 대표),
양진영(제이원 키즈 스포츠) 강사
애란한가족 네트워크 직원 15명 등 총 117명
- 후 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삼성생명

비혼모가정위크숍을 진행한 지 17년이 되었다. 올해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2박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가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에는 비혼모 48가정이 참여했으며, 비혼모가정에 꼭 필요한 양육과 관련한 가족법교육과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교육이 있었다. 강의 이후 참가자들은 인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성과 본 변경, 입양, 파산면책 등에 대한 가정법률상담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양한 임대주택 신청자격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그동안 궁급하고 어려웠던 더 현실적인 여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소통·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클래식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과 “우리는 한 가족 가족레크리에이션”, 유아, 아동,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해약천온천 야외수영장 등에서 체험활동이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녀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고, 다른 비혼모 가족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캠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1.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하였다.

캠프는 법률상담, 주거교육, 가족법 특강 등 전문가가 한 부모가정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와 지원 체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 연계는 단순한 강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비혼모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체계화되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 중 상당수가 ‘실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하였다. 비혼모들에게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고, 실천적 연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 가족활동을 통해 애착 및 친밀감을 향상 시켰다.

클래식연주감상, 물놀이, 해변 산책, 레크리에이션 등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이 마련되었고, 엄마들과 자녀들이 한 공간에서 웃고 뛰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다. 특히 “오랜만에 아이와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고 나도 위로받는 기분이었다.”는 후기는 소감문과 만족도 조사에서 다수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캠프를 통해 가족 간 애착 형성과 정서적 친밀감이 증진되었다.

3. 심리정서적 안정을 확대하고 건강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같은 상황에 처한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전체 레크리에이션, 그룹 활동, 식사시간 등 비공식적인 공간에서의 교류도 활발히 이뤄졌으며,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놓였다.”라는 피드백도 있었다. 캠프를 통해 정서적 지지 네트워크 형성과 공감 공동체의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4. 가족여행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다.

캠프는 일상의 무게에서 벗어나 가족들이 함께 자연 속에서 쉬고, 활동하며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실제로 많은 엄마들이 “일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쉼을 경험했다.”, “그동안의 피로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피드백을 하였고, 정서적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음을 만족도 조사와 소감문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다.

5. 실용적이고 유용한 정보에 대한 교육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서는 가족법 강의, 주거정보 강의, 법률상담, 가족

참여프로그램, 청소년·유아 프로그램 등 연령과 상황에 맞는 실용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체험이 골고루 제공되었다. 또한 캠프 이후에도 인지, 양육비 청구와 같은 소송구조 등을 원하는 비혼모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캠프를 통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비혼모들을 위한 제도과 지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비혼모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의 부정적 시선들에 의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캠프에서 비혼모 엄마들은 자녀를 혼자 양육하면서 건강 악화, 물가 상승과 자녀 교육비 부담, 불안정하고 열악한 주거문제,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 청소년 자녀와의 소통과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사회성 부족, 정서적 불안, 취업의 어려움, 인지 및 양육비판결이후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 의료비 및 심리치료 등의 부담,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늘어난 채무관련 법률문제와 비혼모시설 퇴소 후의 자립준비(주거, 생활 등) 등을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담, 교육, 가족여행, 가족체험, 돌봄시설과 아이돌봄지원 확대, 자녀교육지원, 한부모지원(수급비, 일자리지원, 취업, 자격증취득, 학원비, 진로체험), 임대정보, 경제적 지원, 의료비지원, 법률상담과 무료소송 등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비혼모 가정이 겪고 있는 법적·경제적·제도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이들이 당당히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혼모 가정의 편에서 이들의 권리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해 왔던 것 상담소의 역할과 활동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조은경 상담위원



김○○

안녕하세요. 행복 캠프를 마치며 폭우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운행으로 수련원까지 안전 이동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양 많은 구내 식 덕분에 빈속을 꽉 채울 수 있었고 주옥같은 음악회 덕분에 눈 호강, 귀 호강 한 시간이었습니다. 숲속의 향연 같은 피아노 선율과 플룻 반주에 맞춘 바리톤 선생님의 주옥같은 가곡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라는 곡을 들었을 때는 몸의 전율과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잘해왔고 잘할 것입니다 응원을 받는 듯 황홀함과 눈물이 두 뺨을 스쳤습니다. 주거교육과 레크리에이션 덕분에 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숨을 쉴으로써 호흡하며 이 호흡을 통해 영혼의 맑음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성장해 나갑니다.

한부모가정의 튼튼한 고목나무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밝은 빛과 에너지로 어린 꿈나무들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캠프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2026 병오년 말피해 힘찬 발걸음 내딛는 내년 행복 캠프에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장○○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5년 우리 가족 행복캠핑” 확정 후, 50여 일 동안 아이가 빨리 여행 가서 물놀이도 하고 호텔에서 침대에서 꿀잠 자고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먹고 싶다며 매일 같이 주문을 외며 지냈습니다. 드디어 어제 새벽 “5시야 빨리 일어나!” 한마디에 벌떡 기상해 아이가 1호차에 1등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지금부터 행복 만땅”이라며 물놀이 지칠 때까지 하겠다고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여행의 여정이어서 소떡소떡도 먹고, 아침에 나눠준 햄토스트도 먹고 아주 신났습니다.

숙소도 그렇게 노래하던 푸근한 침대방으로 배정되어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제도 동해온천에서 물놀이를 신나게 했고, 오늘도 아주아주 시간 활용을 하며 물놀이와 물속에서 공놀이도 하고 중간에 쿠폰으로 간식도

먹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곳 한국어성수련원 식사도 학교급식보다 맛있다고 학교급식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바닷가 산책길도 조개껍질 찾고, 바닷물에 옷도 적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주거교육 시간에 임대유형과 종류, 평형계산법도 알게 되어 지식이 늘었습니다. 가족법교육시간의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와 지급명령, 양육비 미지급 제재조치,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양육비 상담시간에 이행명령에 대한 확인 지식도 습득해서 마음의 위안도 얻었습니다. 2박3일 간의 일정이 순삭이었지만, 하나하나의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았고, 아이와 저의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덕분에 즐겁고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양○○

저에게는 이번 옥계캠핑가 가장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이가 어느덧 성장하면서 다음 주 24일이면 ○○이의 생일이 다가오네요. 위로의 선물 같은 캠프 여행이 진짜 너무나 행복 그 자체네요. 예쁜 ○○이가 갑자기 제게 와서 부모라는 걸 배우며 겸손과 교만하지 않고 진정한 부모란 무엇인지 아는 지난 8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능력도 없는 제가 과연 ○○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던져가면서 고단함의 연속이었지만 사랑의 힘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각오로 키워온 것 같습니다. 너만 있다면 뭐가 두렵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은 절대로 없다는 확신을, 누군가 저에게 최선을 다하였냐고 물으신다면 정말이지 후회한 적은 없으니깐, ○○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거주지가 없어서 일당 뛰면서 사우나에서 생활하며 지냈던 “나” 지금은 ○○이랑 모든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사랑을 알아갔습니다! 어떤 남자를 사랑해도 이렇게까지는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는 능력이 있든 없든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물론 힘든 순간이 참 많았지만(해냈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가족 몰래 출산해서 혼자 독고다이다. 매사 중요한 순간에 태어나는 건 선택할 수 없지만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봐도 제 선택은 옳았고 ○○이가 저에게 와줬는데 사명을 다 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부자로 컸으면 하고 행복한 아이로 예쁘게 성장해 주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한 몸 벗가루가 되게 부서져도 제가 영양분을, 사랑을 듬뿍 준다면 우리 ○○이는 예쁜 어른으로 크겠죠? 아직도 제가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혼돈, 혼란스러웠지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I am 마더 나는 ○○이 엄마다, ○○아 소중한 엄마 딸 사랑한다, 사랑해.”

정○○

이번 가족캠핑은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과 더불어 의미 있는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눌 기회가 부족했는데, 이 캠프 덕분에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관계를 더욱 돈

독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캠프에서 준비해 주신 프로그램 중 가정 법률 상담과 주거 교육은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법률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며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삶을 더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동해 약천온천 수영장에 가서 아이와 함께 웃고 즐기며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낯설었던 다른 가족들과의 소통도 즐거웠고, 서로가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위로하는 과정에서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 가족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김○○

비가 많이 왔지만, 아이들과 저도 신나게 먹고 놀고. 몸이 아플 정도로, ㅎㅎ 저도 잘 행복캠ป์ 즐겼어요. 매년 이렇게 미혼모 가정 여름휴가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거, 법률 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프로그램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2박3일이 짧은 정도로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행복하게 지내고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025년 여름휴가도 행복했습니다.

차○○

단 한 번도 가보진 않은 우리 가족 행복캠ป์.

○○이가 5살이어서 좋아할 것 같아 신청은 했지만 ○○이는 감기 걸리고 2박3일 ○○이와 내 짐을 왜 이리 많고 여기에 물놀이 짐도 아, 비까지 미친 듯 내린다. 우산에 양손 가득 짐에 택시도 안 잡혀서 괜히 신청했다 투덜대며 출발. 신촌 기차역에 도착하니 아는 선생님도 보이고 버스타니 여행가는 기분이 들었다. 드디어 도착해서 점심 식사 하고 물놀이 하러 출발.

비가 와서 근처 바다는 못 갔지만 여기 물놀이 하는 곳을 ○○이가 좋아한다. ○○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다 ok이다.

밥도 끼니마다 뷔페로 나와서 오늘 점심을 뭘까? 오늘 저녁은 뭘까? 매 끼니 뭘 나올지 기대되고 맛있었다. 다음 날 비가 그쳐서 ○○이와 바다 가서 돌이 손잡고 바닷물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와 사진도 예쁘게 찍고 오후에 다시 물놀이 가서 ○○이가 너무 즐겁게 신나게 잘 놀아서 캠ป์에 잘 왔다고 생각했다. ○○이 낱고 나를 도와준 첫 시설 선생님들도 3년 만에 다시 만나서 수다도 떨고 너무 반갑고 좋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2박3일 한방에서 같이 지내야 할 룸메이트들도 걱정했지만 정말 배려심도 많고 아가도 ○○이가 너무 예뻐하고 돌이 잘 지내서 이 또한 너무 감사했다. ○○이와 멀리 놀러 와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돌이 2박3일 지내보니 ○○이가 더 많이 애뜻하고 더 많이 소중한 사랑스러웠다. 여러 프로그램들로 인해 배워가는 것도 많고 ○○이와 너무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처음으로 함께한 행복캠프인데 벌써 이틀이 지났네요. 어색했던 첫날이 지나고 나니 벌써 집에 가는 날이라니 시간이 참 빠릅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 조금 힘든 일정이지만 다른 가족들을 보며 내 아이도 저 나이가 되면 우리가 저런 모습으로 함께 하겠구나 생각하며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매년 같이 올 수 있다면 너무 재밌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되고 여기에 속해있다는 것이 부딪힘을 느낀 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이번 캠프에 참여하면서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아이를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엄마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서로서로 도와주는 모습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캠프를 통해 더 많은 걸 알아가고, 다른 가족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이도 여기서 많은 예쁨과 관심을 받았는데 그걸로 더 성장하고 많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김○○

캠프에 처음으로 와봤습니다. 와서 수영장에 가서 물놀이를 하는데 아기와 엄마에게 주신 선물, 힐링과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것 같은데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아이와 함께 놀러 가기가 쉽지 않는데 이 캠프로 인해서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 클래식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정말 멍때리면서 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와 실로폰인지 까먹었지만 그 악기와 멋진 목소리에 취했어요. 아는 노래와 모르는 클래식이었지만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두 번째 날에는 주거교육을 들었는데 저도 잘 몰랐기에 알고 싶어 집중하며 들었는데, 알아야 할 것과 정보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시설도 탁구장이 있었는데, 정말 신나게 정말 재미나게 땀을 흘리며 쳤습니다 ㅎㅎ. 그리고 해변에도 가보고 산책로도 가봤는데 정말 점심쯤엔 하늘이 이뻐서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가기 싫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크리에이션 아이들과 엄마랑 함께 게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고 또 한 번 추억을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올 수 있다면 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인상이 깊은 '우리가족 행복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앗! 그리고 식당에서 해주시는 음식도 정말 다양하게 골고루 영양가 있는 반찬도 최고! 아이도 잘 먹더라구요~ 매점도 없는게 없는 최고의 매점 정말

여기서 떠나기엔 너무 짧네요ㅠ^ㅠ. 아유 아쉬워!!

그리고 저녁마다 야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역시 아시는 쌤들이라 치킨과 피자!! 야식으로는 못 참지요ㅠ!!! 정말 살찌다 가는 거 같은 이 느낌, 그래도 맛있으면 0칼로리 ㅎㅎ.

우리 가족 행복 캠프!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박○○

우리 가족 행복캠프에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딸아이와 손꼽아 기다리던 캠프가 올해는 7월에 딱하니~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님 간병으로 시간을 내어 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많은 비도 내렸고, 개인적인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번 캠프는 못 가는 것인가, 걱정했다가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비가 와도 물놀이할 생각에 잔뜩 들뜬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 한 부모 가정들이 여기 모인 이유였습니다.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활동들은 우리 가정에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특히, 가족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함께 게임에 참여하고 웃으며 즐기는 모습들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다시금 이해하고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캠프에서 제공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우리 가족 각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들에게 꼭 필요했던 양육비 소송에 관한 문제들과 주거 문제들이 어디 가서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의 가려웠던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시는 기분이었고, 이번 캠프에 새로 추가된 클래식 시간에, 공연을 바로 앞에서 직관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게임 시간을 통해 웃음과 기쁨을 나누며, 자연 속에서 산책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캠프를 통해 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딸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은 우리 가족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어 캠프에 참여한 것은 울여름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배려를 받으며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더욱더 힘차게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년보다 몇 주 더 빨리 시작한 캠프인데 2박3일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어요. 아직 몇 개월밖에 안 된 꼬물이 가정들도 많이 참여했는데 우리 ○○이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여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땐 발동동 구르며 하루 종일 아이 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는데 지

금 그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안타깝기도 했고, 이젠 훌쩍 자라 재잘거리는 ○○이를 보며 무탈하게 자라준 아들이 고맙기도 했으며, 잘 버텨온 나 자신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캠프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아이와 다투고 지지고 볶는 날들이 계속되겠지요. 한층 더 가까워진 아이에게 덜 화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행복한 캠프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 김○○

안녕하세요.

건강한 자녀 키우기를 독려하며 교육까지 열어 주시고, 이러한 뜻깊은 여행까지 마련해 주시니 처음 해 보는 경험에 감사와 감탄, 감동까지 선사 받았습니다. 아이와 처음 해 보는 여행이라니, 항상 생업에 바빠 여행은 엄두도 못 내는데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에 부듯했고 저 또한 행복하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히 놀이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도움 되라고 양육비 소송(법률문제), 주거 마련 정보, 어머니들 참여하라고 아이들도 따로 말아주시기까지... 클래식 시간은 평소에 클래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꿈도 못 꾸는데 정말 너무 감동 받아 눈물이 났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태어나서부터 아픈 아이를 키우느라 병원이 일상이었고, 아이가 발달 장애를 동반하게 되면서, 단체로 활동하는 여행은 참여하기가 힘들어 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올해 아이가 많이 건강해져서 잘 걸을 수 있게 되고, 많이 얌전해져서 용기 내어 참석해 보았는데 영아부터 다른 장애 아이들도 있고,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프로그램에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팠던 아이라 아이랑 활동 경험이 적어 아이가 깊은 수영장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 첫날 수영장에서 영아 풀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했고 보행기 튜브를 타고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했었는데 둘째 날도 처음에는 소리 지르고 울고 들어가기 싫어하다가 나중에는 적응해서 잘 노는 모습을 보니 너무 부듯하고 대견했습니다.

식사 전반적으로 너무 맛있었고, 준비해 주신 프로그램들 너무 유익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소리 지르거나 난리를 치는 경우가 있어 클래식과 같은 음악회는 가볼 엄두를 못 했는데 너무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양육비 관련 강의 꼭 들어보고 싶었던 강의였습니다. 주거교육도 전반적으로 알려주셔서 다음번 집 구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일반 월세로 살고 있어 꼭 지원받아 집을 구해야 해서 더욱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너무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백○○

안녕하세요.

저에겐 지난 몇 달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편찮으신 아버지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지시고 임종을 염두 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달으면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매일 먹는 정신과 약은 약물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웠고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더욱 힘겨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한숨 돌릴 즈음 아이의 돌발행동에 학교에서 여러 차례 전화를 받고부터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슴이 무너질길 반복하다 보니 캠프 날이 다가왔습니다. 작아진 아이 수영복 탓에 급히 당근 마켓에서 수영복을 구하고 택배로 받아마자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정신없이 여행 가방을 챙기고 출발 당일 거센 비바람에 걱정을 한 아름 안고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비가

조금은 야속하기만 했는데 폭우를 뚫고 무사히 수련원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년 만에 도착한 온천 수영장도 역시나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였고 굵은 날씨 탓에 조금 추웠던 게 아쉬웠지만 아이들의 밝은 표정이 말해주듯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눠주신 쿠폰으로 출출해진 아이들의 배를 채울 수 있었고 다들 사고 없이 숙소로 돌아온 것이 감사했습니다. 다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목적실에서 열린 클래식 연주는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아름다운 피아노와 플루트의 선율 그리고 바리톤의 웅장한 성량은 1시간이란 시간이 무척 짧게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주신 앙상블필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둘째 날 하느님께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거 교육을 마치고 비가 그친 오후는 물놀이하기에 너무 좋아 다들 첫째 날보다 더욱 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겁 많은 아이가 작은 청개구리를 잡고서는 무척

캠ป์ 일정표

시 간	7/17(목)	7/18(금)			7/19(토)
07:00~08:00	이동 및 도착	아 침 (07:30~08:30)			해변산책 및 자유시간 폐회
08:00~09:00					
09:00~10:00		휴 식			
10:00~11:00		주거교육	영아탁아/ 유아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11:00~12:00					
12:00~13:00	오리엔테이션	점 심			점 심
13:00~14:00	점 심	가정법률 상담			귀 가
14:00~15:00	동해 약천온천수영장 체험	동해 약천온천수영장 체험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저 녁	저 녁			
19:00~20:00	클래식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우리는 한가족_ 레크레이션			
20:00~21:00	가족법 교육				

오랜 결혼생활 동안 폭력에 시달리다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함께 폭력 행위자가 되기도

2021버3*** 폭행 / 2021버3***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10회, 전화상담 1회,
집단상담 3회(Zoom)을 활용하여
화상으로 실시)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7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1회 등 총 23회

상담기간

2022. 5. 16. ~ 2022. 11. 15.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지 25년이 경과하였고, 부부사이에 1남 1녀(25세, 20세)가 있다. 부부는 회사 대표와 직원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

부부는 2021년 12월 사건당일, 전일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짜증을 내고 불평한 문제로 말다툼하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 발을 들어보이며 위협하자 아내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통을 남편을 향해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남편의 안면부위를 3회 폭행하였으며, 남편도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아내의 안면부위를 1회 폭행하고 발로 아내의 옆구리를 수차 폭행하였다. 또 같은 날 밤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아내가 이를 말리고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남편의 안면 부위를 5~6회 폭행하였으며, 남편 역시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아내의 안면부위를 수차 폭행하고 몸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부부는 상호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

고, 서울가정법원에서 본소에 6개월간 상담위탁되었다.

아내는 갈등원인으로 시가와의 갈등 및 남편의 음주문제를 꼽았는데 남편이 술을 마시면 과격해지고 화를 내기에 자신도 그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내는 본 사건으로 자신이 행위자가 되는 상황에 처해진 사실에 분노를 넘어 인생 전체에 대한 회의 및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남편은 아내의 감정적 대응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폭력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아내의 신뢰를 더 잃게 되었다. 특히 상담기간 중 남편이 아내의 폭언을 참지 못하고 폭력을 재발하자 아내가 남편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다. 남편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담을 통해 이해한 대로 아내에게 사과하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여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남편은 금주, 6개월 간 사적모임에 참석하지 않기, 정신과 치료받기 등을 약속하고 이행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대응에 화를 내고 이해하지 못하였던 자신을 반성하고 아내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는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점을 아내와 공유하였으며, 아내도 이전보다 많이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간 후 상담종결시까지 약 3개월간 금주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금주하기로 다짐하였다.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만족도를 사건당시 0점에서 종결시 10점 만점에 7~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좋아진 점으로 1) 음주하지 않고 대화가 가능하게 된 점 2) 타임아웃 활용 3) 순한 감정과 순한 언어 사용 등을 꼽았다. 아내는 남편의 개선 노력은 인정하였으나 그 지속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결혼기간 중 남편의 폭력이 반복되어 온 경험에 기인한 탓이어서 남편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하며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3***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2회,
집단상담 4회(줌(Zoom)을 활용하여
화상으로 실시)

등 총 12회

상담기간

2022. 5. 18. ~ 2022. 12. 12.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아내)와 결혼한지 7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1녀(8세)가 있다. 행위자는 2021년 8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발로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는데 이웃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같은 회사 동료로 만나 결혼하였고 현재도 같은 직장에 재직중이다. 아이 출산 후 장모가 행위자 부부 집에서 같이 지내며 아이를 돌보고 가사도 맡아 해 주고 있다.

행위자에 의하면 사건발생 무렵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 인데 피해자가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외박하는 일이 잦아 갈등이 있던 터에 사건당일 행위자가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폭력을 하였다. 행위자는 사건당시 음주상태였는데 평소 음주남용문제는 없었지만 사건 후 절주하며 조심하고 있었다. 피해자도 행위자의 요구를 수용하며 노력하였다.

부부대화법 점검 결과 행위자는 담쌓기, 피해자는 비난과 무시 등 폭력대화를 하였음을 인식하게 된 행위자는 폭력대화를 중단하고 비폭력대화를 실천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행위자는 성격유형검사를 통하여 자신과 피해자의 성격이 다른 점, 서로 자신의 기준을 따르라고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해하게 되었다.

상담종결시 점검 결과, 행위자의 음주습관은 1주일에 1회, 1회 음주량은 소주 1~2병 정도였고, 폭력은 재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외박하지 않고 일찍 귀가하였다. 장모가 같이 살면서 아이도 돌보고 집안일도 해주어 육아나 가사분담으로 다투는 일도 없고 장모와의 관계도 좋아 불만 없이 지내고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만족도를 사건 당시는 10점 만점에 4~5점, 종결시는 8점으로 평가하였다. 보완점으로 본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자책과 피해자에 대한 불만의 마음 해소를 꼽았는데 이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위자는 향후 폭력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과 절주를 다짐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025년 7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구분	프로그램명	날짜	참석인원	주제	강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차연실 상담위원 / 천다라 상담위원
	라오니모임	7/3	8명	체계적 문제해결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7/10	9명	부부관계 탐색	
		7/17	8명	의사소통의 기술	
		7/24	8명	임파워먼트와 미래계획 세우기	
음주문제 집단상담	7/4	1명	음주와 회복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차연실 상담위원 / 천다라 상담위원
	집단상담	7/2	8명	관계의 정석, 부부 사이에 답이 없을 때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7/9	6명	관계의 정석, 고통에서 지혜를 배운다	
		7/16	7명	관계의 정석, 가족에게 삶을 묻다	
		7/23	8명	관계의 정석, 진짜 어른의 조건	
	동지교실	7/9	43명	부리에 가해진 충격, 아동기 정신건강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음주문제 집단상담	7/4	7명	음주와 회복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어떻게 할까요?



부모와 자녀 ② - 양자, 친양자 ㉑

● 친생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동의권자

Q 문 58 | 전남편이 사망한 후 재혼 하였습니다. 남편이 제 아이를 친양자입양 하려고 하는데 전남편의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이 경우 친양자입양을 할 수 없는지요?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친양자입양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자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라면 어머니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 친양자로 입양되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Q 문 59 |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살다가 3년 전 재혼한 여성입니다. 남편은 제 아이를 친자처럼 사랑하고 있으며 자신의 성을 따라 아이의 성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 역시 제가 재혼 후 출생한 동생과 성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어 남편이 제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친양자입양이 되면 아이의 성과 본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고(민법 제781조) 이 성과 본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친양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므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됩니다(동법 제908조의3). 이러한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하며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친양자입양 동의를 얻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908조의2). 따라서 위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친양자입양청구를 하여 받아들여지면 자녀의 성은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며 법적으로도 친부와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 친양자입양 취소의 효력

Q 문 60 |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자녀가 친양자입양이 된 경우 친양자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친양자입양이 취소되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A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08조의4 제1항, 가사소송법 제30조 제2호). 친양자입양 취소 청구가 있을 때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사향, 친양자입양 취소의 동기, 양부모와 친생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제908조의2 제3항). 친양자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동법 제908조의7 제1항). 친양자입양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동법 제908조의7 제2항).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할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Q 문 61 | 남편과 사별 후 경제적 어려움과 병으로 인해 이웃의 소개로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시켰습니다. 입양 당시에는 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자식 이상으로 잘 키우겠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 말로는 밥도 잘 주지 않고 구타도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살고 있는 집에도 몰래 수차례 찾아가 본 일이 있는데 아이가 멍도 든 것 같고 차림새도 구질구질하여 전혀 돌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고생스럽더라도 차라리 제가 다시 데려와 키우고 싶은데 파양할 수 있을까요?

A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친양자와 양친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파양이 확정된 때로부터 부활합니다(동법 제908조의7 제1항). 따라서 양친이 자녀를 학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귀하는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제4호).

●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가 있을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Q 문 62 | 친양자입양을 했는데 아이가 온갖 사고를 치다가 학교도 그만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 후에도 몇 달에 한 번씩은 집에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면 저희 부부를 구타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친자식처럼 키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파양할 수 있나요?

A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2호). 패륜행위를 이유로 한 친양자 파양청구가 있을 때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사항, 친양자입양 및 파양의 동기, 양부모와 친생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08조의6, 제908조의2 제3항). 친양자의 파양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합니다(동법 제908조의7 제1항).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중에서



Q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누구에게도 털어놓기가 힘든 마음에 산부인과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2주 전, 자다가 갑작스럽게 진통을 느꼈고, 임신 및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과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부담에 119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혼자 출산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는데, 제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A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위 각 서면들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3. 10. 31. 제정되고 2024. 7. 19. 시행 중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생모는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출산 후 아동 보호’를 신청하여 상담을 받고, 위 기관에서 제시하는 가명으로 생모와 자녀가 의료기관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출산 후 아동 보호’를 신청한 생모의 출산정보가 생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된 경우에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산 후 아동 보호’신청 사실의 통지와 함께 생모에 관하여 제출·통보된 것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제3

항에 따른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① 아동의 생모에 관한 비식별화된 가명, 관리번호 ②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및 성명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포함한 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기임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출산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하여 위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가명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집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출생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모에 대한 정보는 비식별화된 가명으로만 나타나게 되고, 생모의 실제 성명 등이 기록되어 있는 출생증서는 밀봉된 채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여 보관됩니다. 다만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자녀는 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의 신청인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박슬기 변호사

〈신성한 나무의 씨앗〉

감독 모함마드 라솔로프

출연 미삭 자레, 쇼헤일라 고레스타니, 마흐사 로스타미, 세타레 말레키



이만(미삭 자레)은 오랫동안 염원하던 수사 판사로 승진한다. 때는 2022년,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 착용 문제로 도덕 경찰에게 끌려간 뒤 의문의 죽음을 맞은 사건이 일어난 무렵이다.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불길같이 일어난다. 시위대는 ‘여성, 삶, 자유’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혁명 재판소는 시위대에 참여한 이들을 설 새 없이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하며 사형 선고도 너무나 쉽게 내린다. 수사 판사는 그 무시무시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며, 시위에 찬성하는 이들은 당연히 수사 판사를 증오한다. 수사 판사의 신상이 새어나가기라도 하는 순간 그와 그의 가족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수사 판사에게는 총이 주어진다. 이만은 총과 함께 퇴근하고, 총과 함께 출근한다. 가족 중 그 사실을 아는 건 아내 나즈메(쇼헤일라 고레스타니)뿐이다.

대학생인 큰딸 레즈반(마흐사 로스타미)과 중학생인 둘째 딸 사나(세타레 말레키)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가 총을 갖고 다닐 정도로 위험한 위치에 속했는지를 알지 못했다. 지금 두 딸의 최대 관심사는 시위의 향방이다. 그런데 어느날,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마친 이만은 전날 밤 서랍 안에 챙겨두던 총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다.

모함마드 라솔로프의 2024년 영화 〈신성한 나무의 씨앗〉은 인도보리수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인도보리수의 씨앗은 다른 나무의 가지 위에 떨어진 후 그곳에서 발아한다. 뿌리가 땅에 닿으면 숙주 나무를 감아 오르며 질식시키고, 결국은 홀로 살아남는다. 그리고 다음 장면, 영화가 ‘진짜’ 시작하는 첫 장면은 테이블 위로 하나하나 떨어지는 총알들이다. 총알이 그 씨앗일까. 죄 없는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던 이만은 서서히 허리춤에 자리 잡은 총의 위력에 물들어간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할 것이다. 심지어 ‘내 쪽’의 폭력이 ‘그쪽’보다 더 힘세고, 신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어마어마한 후광까지 거느리고 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위대의 정당성을 격정적으로 토로하는 딸 레즈반과 20년 넘게 공무원으로 살아온 아버지 이만의 권위가 충돌하고 나서 총은 사라졌다. 그 총이 없으면 이만은 곧장 수사 판사가 지녀야 할 권위와 자격을 잃게 되고, 한직으로 쫓겨날 것이다. 분명 가족들 외에는 이 총을 가져갈 사람이 없다. 아내와 딸들에게 계속해서 ‘자백’을 강요하는 이만은 점점 ‘아버지’의 모습을 잃고 오로지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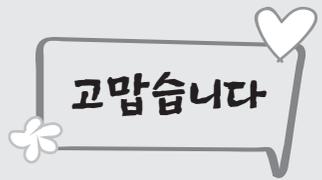
자'의 정체성으로 갈아탄다. 이제 영화는 거침없이 무시무시한 서스펜스와 불안으로 질주한다. 나라를 뒤흔들고 있지만, 바깥의 거리를 떠들썩하게 할 뿐 안온한 중산층의 실내까지는 침범하지 않을 것 같았던 시위대의 끊임없는 함성은 이제 이만의 가족들을 분열시키는 천재지변 같은 재앙으로 몰아닥친다.

모함마드 라슬로프는 이란의 다른 많은 영화감독처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국가와 지속적으로 충돌했다. 그는 2019년에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감옥에서 <신성한 나무의 씨앗>의 시나리오 초고를 썼다(영화에 등장하는 심문관의 압박 장면은 라슬로프가 실제로 겪었던 상황을 바탕으로 했다고 한다). 석방되고 나서도 그는 언제 다시 체포되어 감옥으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압박감에 이 영화를 첩보전처럼 몰래 촬영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대부분은 실내에서만 찍혔다(경찰에게 폭력적으로 진압당하는 시위

장면은 실제로 참가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화면들을 여러 개 모아서 합친 것이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시위대의 함성은 불길한 소음으로 이만의 집을 침범하고, 귀를 막아도 눈을 돌려도 나/우리와 이 세계의 연결을 도저히 끊어낼 수 없다는 실감으로 다가온다. 이 실내극은 점점 불길한 결말로 이끌려 간다.

첫 장면에서 이만의 세계 위에 떨어져 발아하는 것 같던 총알이 마지막에 이르면 그 의미가 완전히 역전된다. 결국엔 누가 숙주 나무를 이기는가. 낡은 권위와 질서는 반드시 붕괴한다. '여성, 삶, 자유'라는 슬로건은 결코 사라지지 않은 채 <신성한 나무의 씨앗>이라는 진술서 위에 영원히 불타는 상흔을 남긴다. 영화는, 삶은 때때로 너무나 위대하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2025년 7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대학생 자원봉사
권윤아 님



후원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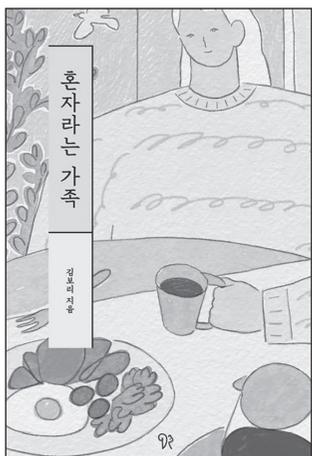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최문원, 이현혜, 천정환, 최복순 님



혼자라는 가족

김보리 지음

다람, 2023(초판 1쇄)



늦은 오후 중앙도서관 구석의 여학생 휴게실에 구겨져 있다가 배가 고팠다. 그날은 함께 점심을 먹을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다. 다른 일이 있거나 지방의 본가에 갔거나 그랬을 터였다. 열람실을 돌면 함께 밥 먹어줄 동지가 있을 테지만 귀찮기도 하고, 문득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르는데 밥도 혼자 못 먹으면 어쩔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어 지하 식당에 가서 국밥을 먹었다. 혼자. 혼밥의 시작이었다. 혼자 밥 먹기, 해보니 별일도 아니었는데, 이후 나는 배가 고프면 언제 어디서든 혼자 잘 먹는 사람이 되었다.

결국 혼자 살아 본 것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진 세상이다. 심지어 혼자 사는 것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23년 35.5%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같은 기간 4인 가구의 비율이 31.1%에서 13.3%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2020년부터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라는 보고서를 내고 있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족은 ‘다양한 형태’라는 말로 수식된다. 혼인과 출산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었던 때는 지나갔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가족의 일원이 되고 보통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근래에는 성인이 된 이후의 가족은 선택 사항이 되었다.

우리 사회에 1인 가구가 많아졌지만, 상당수는 예전에 내가 그러했듯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자취 형태의 주거를 선택한 젊은 층이다. 많은 경우 결혼하기 전까지 혼자 사는 일시적인 1인 가구여서 일반적으로 가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로 혹은 상황에 따라 혼자 살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들도 있다. 이 책 『혼자라는

가족』은 그러한 선택을 한 저자가 쓴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 대해 ‘지극히 평범하고 이토록 사적인 비혼 - 온전히 혼자 살아가기를 선택한 삶’이라 설명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와 가정의 경향성을 담아 이 출판사에서 시리즈를 통해 서로 다른 형태의 가족을 구성해서 살아가는 이들의 다양한 이야기 담아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출간된 것이 이 책 『혼자라는 가족』이다.

“인생이란 자신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신의 조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만의 몫으로 주어진 시간을 견디고 버티어 낼 뿐이었다. 다만 버티는 방식이 다를 뿐이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슬픔보다 오늘의 안위와 평화로움을 기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일 따름이었다.” - 120쪽

“노년의 삶을 생각해 본다. 중요하게 다가올 문제는 ‘어떤 것들로 하루의 일상을 채울 것인가’, 그리고 ‘누군가와 여전히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이지 않을까 싶다.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잘 늙어갈지, 그보다 어떻게 하면 천천히 잘 저물어 갈 것인지 고민해 볼 일이다.” -197쪽

혼자 사는 삶이던 혼인, 출산 등으로 이어지는 삶이던 끝에 가서는 결국 다 비슷하다.

저자 김보리는 공공예술 작업을 하며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

이숙현 편집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소에서 실무수습을 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소감을 싣는다.

고 영 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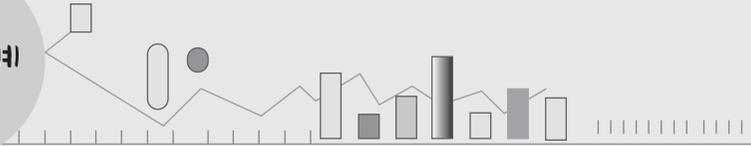
학부 시절, 봉사활동이나 아동·시니어 대상 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막연하게나마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에도 자연스럽게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업 중 실제 사례를 다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접한 가정폭력 사건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가정 안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상황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 내 갈등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되는 상황을 실제로 접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사사건 현장에서 다뤄지는 것을 직접 보고 배우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실무수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법 수강 경험이 없어 걱정도 있었지만 법학 실무 경험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례집도 주셔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며 가족법에 대한 지식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가사사건이 특수한 분야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아동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사안에서 민법의 대리권 남용 법리를 적용하거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형법의 구성요건을 검토하는 등 다른 법과 많은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배웠던 법리를 실제 사안에 적용해 볼 수 있어 학교에서 배운 실체법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수습을 마치고 나니 활자로만 알았던 딱딱한 법리가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양상으로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의 상담 참관이 인상 깊었습니다. 상담소를 찾는 분들은 단순히 법적 문제만을 안고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 법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나 다른 기관의 조력이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렇듯 법률상담이 다루는 영역이 폭넓고 복합적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소에서 이혼 소송 뿐 아니라 조정 절차에도 상당한 노력을 들이거나, 이혼 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심리 치유 모임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평소 알고 있던 법적 절차 외의 것들이었습니다.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 절차를 보며, 사람 자체에 초점을 둔 보이지 않는 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은 상황을 해결하는 바탕이 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감정과 구체적인 사안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법학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상기해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을 깨닫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2주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알찬 활동을 하며 다양한 법전원의 멋진 원우들과 즐거운 실무수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수습을 도와주시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하계 실무수습 진행

2025년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이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은 본소의 법률구조과정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여, 실사례를 체험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법률지식을 현실에 접목,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공익 및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수습은 오리엔테이션, 기관 및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이해, 가족법에 대한 이해 : 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이해, 법률구조서류 검토, 법률구조서류 작성 실습, 사이버상담 실습, 면접상담(본소 및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참관 및 보고서 작성, 변호사 업무 소개 및 실습 : 판례평석, 가사소송 절차 및 소장 작성에 대한 이해 및 과제, 가정폭력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 가정폭력피해자 집단상담 참관 및 기록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실무수습에는 총 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년 강채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년
고영서 / 이소현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년 정채림

“뿌리에 가해진 충격, 아동기 정신건강과 자살” - 동지교실



지난 7월 9일, 본소 강당에서 개인과 가족의 정신건강 및 행복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강좌인 '동지교실'이 열렸다. 이날 강좌에서는 인하대학교 황순찬 교수가 '아동기 정신건강과 자살'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강사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청소년 자살 증가 현상에 주목하며, 자살의 원인이 우울증 외에도 가정 내 갈등, 폭력, 방임, 소속감 결여 등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자살 이론들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자살은 유전적 요인보다는 가족관계나 대인관계와 같은 후천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아이들이 부모의 불화로 인해 자신을 짐으로 느끼거나, 부모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망감을 느낄 때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오늘날 청소년 자살은 주로 중학교 진학 후 급증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경쟁적인 환경에 대한 부적응, 사춘기의 혼란, 부모의 지원 부족 등이 있다. 이는 청소년이 미시적인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보호적 관계의 부재가 부정적인 요소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시스템과 상담 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부모는 자녀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부정적인 경험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강연을 통해 자살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아동과 청소년기의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다음 '동지교실'은 8월 13일 본소 강당에서 '과도한 자기중심성,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에서는 가정문제의 예방과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연 2회 진행 중이다. 이에 지난 7월 10일 '인간의 마음, 사랑과 분노'를 주제로 본소 8층 강당에서 첫 번째 강의가 진행되었다.

강의에서 마음은 생명체의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형성된 것이며, 감정과 이성, 무의식과 의식, 경험과 기억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하였다. 그중 인간의 감정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이 있게 발달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본질적으로 마음이란 타자와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의 감정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부부관계와 같은 친밀한 인간관계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언어화하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나의 느낌을 전달하려는 태도는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참가자들은 마음과 감정의 기원에 관해 이해하게 되었으며, 친밀한 관계일수록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소통하여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두 번째 강의는 오는 11월 13일 '갈등의 해소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주제로 실시될 예정이다.

배인구 변호사 · 상담소 가족법개정자문위원 『가족, 법정에 서다』 발간



상담소의 가족법개정자문위원이며 가사상속 전문변호사인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YK)가 현대 한국 사회 가족의 모습, 가족법에 대한 생각을 담은 저서 『가족, 법정에 서다』(인티앤)를 발간하였다. 이 저서는 21년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였고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

년전문법관으로 5년간 근무했던 저자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배인구 변호사는 여성가족부 산하였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화에 앞장섰으며, 이혼 전후 당사자들이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정해 최초로 대외 공표하는 데에도 일조했다. 배 변호사는 책을 쓰게 된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쟁 한가운데에서 다투기보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가족들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배인구 변호사는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가정법원 재직 당시인 2012년부터 상담소와 인연을 맺어 2014년부터는 상담소 가족법개정자문위원으로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상담소의 가족법개정 관련 활동을 함께 이어가고 있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

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 여름방학 대학생 현장실습

7.1. - 8.31.(이화여대) - 정다현

7.1. - 7.28.(동국대) - 권수진, 김시연, 이경현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박채영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7월 14일 서울가정법원 강당에서 진행된 재판역량강화교육에 참석하였다. 16일에는 한국가족법학회 전경근 회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방문을 받고 가족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7월 7일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서 서울가정법원 재판역량강화교육(상속, 이혼과 조세 I)에 참여하였고, 11일에는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14일부터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무수습을 관장하고 상담참관 등을 지도하였다. 28일에는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분전교육 관련 회의에 참석하였다.

2025년 7월 상담통계

총 건수 4,713

법률상담 (4,076)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1,080	2,725	223	48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54	41	42

• 인터넷 정보 이용 31,797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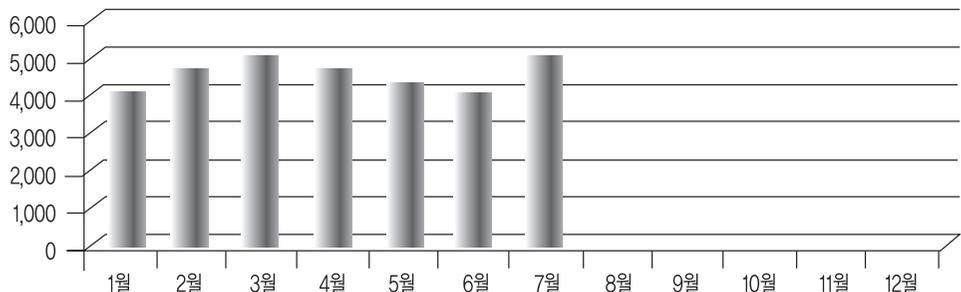
2025년 7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713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076건(86.5%), 화해조정 554건(11.8%), 소장 등 서류작성 41건(0.9%), 소송구조 42건(0.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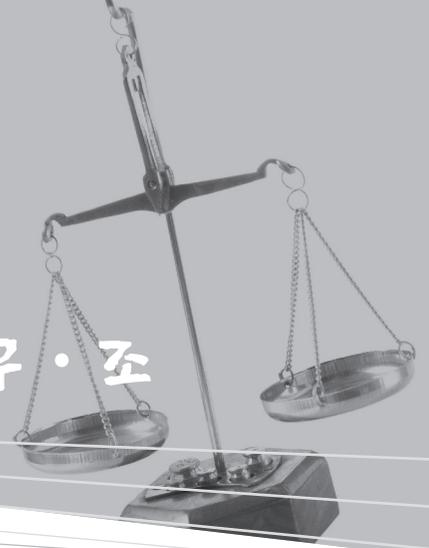
법률상담 4,076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5년 6월에 비해 남녀관계(0.1%→0.2%), 이혼(28.3%→33.5%), 양육비(6.3%→7.3%), 면접교섭권(1.0%→1.3%), 인지(1.1%→1.5%), 친생자존부(1.3%→1.7%), 성변경

(0.7%→0.9%), 파양(0.1%→0.2%), 미성년후견(1.0%→1.5%), 임대차(0.2%→0.3%), 부동산(0.2%→0.3%), 민사기타(0.8%→1.0%), 성폭력(0.0%→0.1%), 형사기타(0.9%→1.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076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80건(26.5%), 전화상담 2,725건(66.9%), 인터넷상담 223건(5.5%), 순회상담 48건(1.2%)이었다.

2025년
월별
총건수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아내 및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24-1-79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50대)는 2005년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전후로 피고의 전처와의 관계정리 과정, 그 외 피고의 여자관계와 관련된 다툼 등으로 갈등을 빚어 왔고, 2006년경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혼인생활 중 원고와 사건본인에 대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표출한 적이 종종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23년 9월경 원고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사건본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고를 때려 원고를 폭행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4년 1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사건 이후 원고와 사건본인은 피고에 대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를 요청하였고, 2024년 1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사건본인에 대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였다. 원고와 사건본인은 위 사건 이후 집을 나와 보호시설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6. 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3.부터 2025. 6.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 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3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2,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협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5-1-44

담당 : 정혜인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30대)는 2015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3명을 두고 있다. 원고는 보육시설에서 자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생활을 시작했으나, 혼인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렸다. 피고는 화가 나면 원고의 뺨을 때리고, 집기를 던지는 등 폭력적 행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2025년 1월경 피고는 원고와 말다툼 중 드라이기, 의자 뚜껑 등을 원고를 향해 던지고, “너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원고를 위협하였다. 또한 원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침대로 넘어뜨린 후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였다.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원고를 폭행하였고, 사건본인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서울가정법원 2025. 6. 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을 2025.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금에 대해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하기로 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10,000,000원을 2025.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금에 대해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 명의의 2025. 4. 16. 기준 우리카드 우리스피드론 잔액 29,343,324원에 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2025. 5. 10.부터 매월 10일에 금 1,000,000원(일백만 원) 씩 총 30개월간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는 이를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에 사용하기로 한다. 피고가 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지급이 지체된 경우, 피고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이다.

라. 피고는 2026년 1월 25일까지 원고와 사건본인들이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이하생략의 월세(100만 원) 및 공과금(30만 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마. 원고와 피고는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기로 한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6. 2. 10.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10일에 사건본인 1인당 월 80만 원씩을 지급한다.

6. 피고는 매월 2회, 주말 또는 공휴일을 이용하여 자녀들과 면접교섭 할 수 있으며, 그 일정은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다. 사건본인들이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허용하기로 하며, 1박 또는 그 이상의 숙박을 수반하는 교섭도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다.

7.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8.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9.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에 대한 과거 및 장래양육비 지급 결정

법률구조 2025-1-81

담당 : 장성민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30대)과 상대방(남, 40대)은 2008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22년 5월 협의이혼 하였다. 청구인은 협의이혼 전 상대방과 양육비에 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22. 3. 1.부터 사건본인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일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육비 지급각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22년 5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출석하여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양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의이혼의 사확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협의이혼 이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미지급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5. 7. 25.)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3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5.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5년 8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 ▶ 일시 : 매주 평일 상시
- ▶ 강사 : 본소 상담위원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의 제목
11월 13일	갈등의 해소와 함께 살아가는 법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등시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의 제목	강사
8월 13일	과도한 자기중심성, 자기애성 성격장애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9월 10일	균형의 상실, 경계선 성격장애	
10월 15일	누적된 스트레스의 범람, 공황장애	
11월 12일	시간의 멈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12월 10일	끝없는 도피, 중독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6년 1월 13일(화) ~ 15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8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 이혼 관련 법률 / 부모·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6년 7월 중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우리 가족 행복캠프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 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상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시 ▶
2026년 7월 중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